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245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6. 3. 접수 제1196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D는 2021. 3. 29.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3. 7. 31. 기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내지 카드결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D는 2022. 6. 3.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96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2021. 3. 29.부터 2022. 5. 24.까지의 신용카드대출금,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가 무자력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21. 12. 30. 시어머니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D는 무자력 상태임에도 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시어머니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서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선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사빈

별지